



# 2007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Ⅱ) (육계관련)

농림부

- 지난해에 이어서...

## ② 축산물검사

### 1. 목적

- 축산물(식육·우유 등)의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위생검사 강화로 소비자 신뢰 및 국민보건 증진 도모

### 2. 시책 및 추진방향

- WTO/SPS 협정에 따라 국내·외 축산물의 차별 없는 검사를 위한 축산물 검사장비 현대화 및 노후장비 교체 지원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한 위생검사 및 관리 강화

### 3. 근거법령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축산물의 검사) 및 제 40조(보조금)

###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1992~2003년	2005년	2006년	2007년(예산안)	2008년 이후	
사업량	-	73점	101점	161점	500점	
사업비	계	70,332	5,515	5,714	6,199	49,200
	보조	37,260	3,189	3,304	3,569	27,100
	응자	-	-	-	-	-
	지방비	33,072	2,326	2,410	2,630	22,100
자부담	-	-	-	-	-	

###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 가. 사업내용

#### 1) 축산물 검사장비 지원(37종 161점)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시·도 축산위생연구소 등)에 식육 중 잔류물질·미생물검사, 원유검사, 축산물가공품검사 등을 위한 검사장비 구입예산 지원

검사장비 구입내역(별표 1)

- HPLC 등 잔류물질 검사장비 8종 123점
- 중금속분해장치 등 가공품 검사장비 4종 4점
- 체세포수검사기 등 원유 검사장비 2종 3점
- 미생물분리동정기 등 미생물 검사장비 11종 15점

- 초음파세척기 등 기타 검사장비 12종 16점

#### 2) 원유검사보조원 인건비 지원(41명 378,730천원)

#### 3) 검사장비 유지·보수비(335,160천원)

- 검사성적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후화된 검사장비 및 정밀검사 장비의 유지·보수비 지원

○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지원내역(별표 3)

#### 4) 축산물 유상수거비 지원(195,000천원)

- 축산물 수거시 무상수거 제도에 대한 업체 부담 경감을 위해 유상수거비 지원

○ 축산물 유상수거비 지원내역(별표 4)

#### 5) 검사재료비 지원(939,000천원)

- 도축검사 수행을 위한 도축검사용 색소 구입비 지원

#### ○ 식육 중 미생물검사

- 검사대상 :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살모넬라균 등
- 사업량 : 120천건

- 검사내용 : 식육중미생물검사요령(농림부고시),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검역원고시) 참조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식육 중 잔류물질검사
  - 검사대상 : 항생제, 합성항균제, 농약 등 유해 잔류물질
  - 사업량 : 약 120천건(소·돼지·닭·오리·양(염소 포함))
  - 검사내용 :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농림부고시) 참조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 신속간이검사키트 적용시 우선 구입·사용
- 원유검사 공영화화를 위한 검사재료비 지원
-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축산물 수거검사
  - 검사대상 : 식육가공품, 유가공품, 알가공품 등
  - 사업량 : 6,300건
  - 검사내용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검역원고시)”, “2007년도 축산물위생감시지침” 참조
  - 검사기관 : 시·도지사 소속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식육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검사
- 젖소 유방염 검사
- 검사재료비 세부지원내역(별표 5)
- 6) 지원기준
  - 검사장비, 원유검사보조원 인건비, 검사장비 유지·보수비
    - 정률지원 : 국고보조 50%, 지방비 50%
  - 검사재료비 : 국고보조 100%
    - 국고보조가 부족한 경우 지방비 추가 확보

나. 2006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6,199	3,569	3,569	-	2,630	-
검사재료비(1722-215-201)		939	939	939	-	-	-
원유검사지원(1722-215-305)		908	454	454	-	454	-
원유검사보조원인건비		378	189	189	-	189	-
검사장비유지보수비		334	167	167	-	167	-
축산물 유상수거비		196	98	98	-	98	-
검사장비(1722-215-412)		4,352	2,176	2,176	-	2,176	-

■ 담당부서 : (02)500-1917~19 축산물위생과

④ 가축방역

1. 목적

- 가축전염병의 발생·만연 방지로 양축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 및 경쟁력 제고
- 인수공통전염병·기생충병 등의 근절 추진으로 국민보건위생 수준 향상

2. 시책 및 추진방향

- 민·관 공동으로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 및 돼지콜레라 조기정정화를 위한 더욱 강도높은 방역시책 추진
- 예방주사, 농장간 차단방역 등은 농가 또는 민간 방역단체 책임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농가방역 지원을 위한 예방약·검진약품 등 공급과 질병 감염측을 색출·살처분 실시, 국가간 검역강화 등 추진
- 질병예찰 및 검색을 강화하여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신고(전용전화 1588-4060)와 철저한 긴급 방역 추진체계 구축
- 일선 방역행정기관(가축위생시험소 44개소) 인력 및 장비 지원을 확대, 방역기능 강화
- 방역시책 추진 강화를 위하여 관련법령 및 제도 개선 추진

3. 근거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8조(보상금) 및 제50조(비용의 부담)
- 수의사법 제34조(연수교육)

4. 연도별 지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1992~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예산안)	2007년이후
사 계	313,192	43,309	60,424	109,370	225,000
보 조	219,380	30,482	51,509	102,090	191,250
융 자	-	-	-	-	-
지방비	95,572	12,827	8,594	7,200	33,750
자부담	240	-	240	80	-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긴급방역재료비 : 전염병 발생지역 및 전국 일제 소독에 소요되는 소독약품 공급 등
- 예방약품 등 공급 : 예방주사·검진·기생충구제,

진단키트 등 약품공급

- 예방접종 시술·채혈비 : 정부지원 예방약 접종시술비 및 소부루세병 검진 채혈비용 지원
- 수의사 연수교육 : 대한수의사회의 수의사 교육 실시비용 지원
- 살처분보상금 및 도태장려금 : 구제역, 돼지콜레라, 오제스키병 등
-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지원 : 방역보조원, 방역장비 등

나. 사업대상 및 지원기준

- 사업대상 : 시·도(군), 가축위생시험소(44개소)
- 지원기준 : 국고 70%, 지방비 30% 수준(세부사업별 지원기준 상이)
  - 예방주사, 검진 및 기생충구제 등 약품비 : 국비 70%, 지방비 30%
  - 살처분보상금, 혈청검사사업 등 : 국비 100%
  - 가축위생시험소 방역보조원 및 장비 지원 : 국비 50%, 지방비 50%
  - 예방접종 시술·검진 채혈비 : 국비 50~60%, 지방비 40~50%
  - 랜더링처리시설 보강 : 국비 50%, 지방비 30%, 자담 20%

다. 2007년도 사업비 내용

(단위 : 백만원)

내용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비 합계	예산액(농특회계)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계		109,396	102,089.5	102,089.5	-	7,199.5	80
긴급방역재료비	-	453	453	453	-	-	-
살처분보상금	20,611천두	80,000	80,000	80,000	-	-	-
수의사연수교육	700명	40	40	40	-	-	-
예방주사 등	1,358백만두	27,339	20,828	20,828	-	6,511	-
방역장비	94점	1,537	768.5	768.5	-	688.5	80

■ 사업시행기관 : 시·도(시군자치구), 가축위생시험소

[별표] 2007 가축방역사업비 세부내역(단위)

(단위 : 천수·건, 천원)

구분	세부사업명	사업량		2006 사업비			2007 예산(국비)
		2006	2007	계	국비	지방비	예산(국비)
예방주사	뉴캐슬병(부화장)	650,000	650,000	2,600,000	2,600,000	-	-
	뉴캐슬병(농가)	650,000	650,000	2,600,000	1,300,000	1,300,000	-
	마이코플라즈마	3,840	3,911.6	387,840	387,840	-	-
검진	추백리(평판)	111	100.5	13,764	8,214	5,550	-
	추백리(EI:ISA)	22	14.5	38,566	37,466	1,100	-

※ 정확한 예산(국비, 지방비) 산정은 예방약 등 조달청 단가 계약이 완료되는 시점(2006.12월경)에 가능. 2007년 "가축방역사업계획 및 실시요령" 발간(2006.12월)시 정확한 예산 명기

⑤ 가축 공제

1. 목적

- 자연재해(수해, 풍해 등) 및 화재 등으로 가축 피해 발생시 이를 보상하여 축산경영의 계획화와 양축가 소득보장
-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피해를 입은 농가에게 재생산 여건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양축기반 조성
- 전염병의 조기 발견 및 축사시설에 대한 안전진단 등으로 재해예방

2.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공제 가입두수를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소득안정망 확충 및 공제요율 안정화 도모(공제사업 정착시까지 납입공제로 일부 지원)
- 공제사업에 대한 농가홍보와 교육강화
- 축산경영의 계획화와 양축가 소득보장을 위한 상품 개선 및 개발

3.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4. 연도별 추진실적

(단위 : 천두, 백만원)

구분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대상가축	소	소	소	말, 돼지 추가		닭 추가		오리 추가	평, 메추리 추가	
사업조합	70개	93	104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전국	
공제가입두수	35	33	29	632	2,317	11,899	21,375	28,404	45,845	
수입공제로(보조금)	813(500)	696(398)	1,038(519)	3,061(1,553)	8,759(4,717)	16,434(8,618)	23,686(12,068)	25,734(12,663)	31,044(15,021)	
지급공제금	건수	355건	1,624	1,078	1,767	3,421	6,760	12,807	12,240	9,101
	공제금	319	1,219	955	1,694	4,163	12,029	22,404	21,051	18,460
손익	△53	△650	△325	△104	△361	△1,689	△4,789	△646	4,548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사업내용

- 대상 : 소(생후 2개월령 이상), 말, 돼지, 가금(닭, 오리, 평, 메추리, 칠면조, 타조, 거위), 사슴
- 공제사업자 : 농협중앙회(조합) 및 농림부장관이

- 지정된 민영보험사
- 공제가입금액 : 가입자 자율결정
- 공제가입기간 : 1년단위(월 단위도 가능)
- 공제요율 : 추후 사업시행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공제료에 대한 정부지원내용 및 지원조건
  - 납입공제료 : 촉발기금보조 50%, 가입자 부담 50%
  - 축종별 가입대상 범위 및 지원비율(답)

구분	가금	축사
가입대상	오리, 종계, 육계, 산란계, 평, 메추리, 타조, 거위	가축사육 건물 및 부속건물
가입형태	포괄가입	포괄가입
지원비율	납입 공제료의 50%	납입 공제료의 30%

※ 지원비율 등 세부사항은 추후 변동 가능

- 공제금 지급수준(보장범위) : 시가의 80%~100% 까지 지급

구분	보장범위(보상하는 사고)	보장내용 (공제금 지급)	비고
가금	○ 화재, 풍재, 수재, 설해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과시가중 적은 금액의 95% 까지 보상	제한없음
	○ 전기적장치위험담보특약 - 베팅으로 인한 전기장치의 고장 에따른 손해	○ 가입금액 한도로 시가의 95%까지 보상	
축사	○ 화재, 풍재, 수재에 의한 손해	○ 가입금액 한도내 손해액	

※ 세부 보장 범위 등에 대하여는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내용

(단위 : 천두, 백만원)

세부사업	사업량 (천두)	사업비				
		예산액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합계	53,346.1	48,764	24,382			24,382
○ 납입공제료	42,149.7	48,764	24,382			24,382
- 소	273	29,054	14,527			14,527
- 돼지	5,469	12,230	6,115			6,115
- 말	1.0	2,678	1,339			1,339
- 가금	47,604	4,798	2,399			2,399
- 사슴	0.1	4	2			2

- 담당부서 : (02)500-1897 축산정책과  
(02)2127-7673 농협중앙회 공제보험사업부

### 농업종합자금지원 (자율)

#### 1. 목적

-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지원되는 농업분야의 세부사업을 통합하여 농업 경영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종합지원하고 시설·개보수자금과 운영자금, 농기계자금을 통합 지원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타당성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자금대출후 사후관리까지 일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자금의 효율성 제고

#### 2.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업경영체가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따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경영체의 자율성을 존중
- 대출취급기관이 경영분석을 통해 대출여부와 대출금액·대출방법을 결정하고 자금지원과 컨설팅을 병행
  - 대출취급기관이 사업수익성·재무구조평가 등 경영분석을 통해 자금을 대출하고 자금대출후에는 경영실태 점검 등 사후관리도 일관 담당
  - 전문적인 경영분석 또는 기술지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대출취급기관의 자체 컨설팅부서 혹은 외부 전문컨설팅기관 활용
-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자금지원
  - 시설·개보수자금, 운영자금, 농기계구입자금(10백만원 이상)을 일괄 지원하고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금액을 필요한 시기에 지원.
  - 다만, 농기계생산지원자금 및 농촌가공산업 육성자금의 경우 당 연도 예산 중에서 각각 200억 및 30억원 한도내에서만 지원
  - 사업발전단계별로 경영평가를 거쳐 추가지원을 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단계적 경영발전 지원

####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 제11조(가족농의 경영안정), 제13조(전업농업인 육성), 제14조(여성농업인의 육성), 제15조(영농조합법인의 육성), 제16조(농업회사법인의 육성), 제17조(농업인의 경영혁신 및 자금지원)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
- 농어촌정비법 제66조(농어촌관광휴양사업의 육성)
-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 농지법 제20조(토양의 개량·보전)
- 종자산업법 제165조

4. 연도별 지원계획

	2006 사업비			2007 사업비(P)		
	계	국고용자	대출기관용자	계	국고용자	대출기관용자
계	백만원 876,100	175,220	700,880	백만원 1,020,000	153,898	872,202

※ 원예특작과 축산 등 세부사업별로 내역을 구분하지 않고 수요에 따라 지원  
(다만, 농기계생산지원자금과 농촌가공산업육성자금의 경우 정해진 한도내에서만 지원)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1) 지원대상자

- 해당분야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심사·평가를 통해 사업수행능력과 사업타당성을 인정받은 농업인(신규포함), 객토희망농가, 1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있는 농업법인, 기타 농촌가공사업자, 농기계생산업자 및 농기계보관창고사업자, 종자산업법 제137조에 의한 종자업 등록을 필한 업체 또는 개인육종가

※ 농기계생산지원자금의 배정기준(업체규모별, 농기계종류별)은 농림부 사업담당부서에서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원예특작, 축산,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농촌민박사업은 시설·개보수·운영자금과 농기계자금 지원

- 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RPC·도정공장 제외), 농업정책자금(지방자치단체사업 포함)을 지원받은 유통저장시설보유사업자, 경주마사육 축산농가는 개보수 및 운영자금, 농기계자금을 한하여 지원

단, 쌀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RPC·도정공장 제외)은 농기계보관창고 설치자금 지원 가능

- 농촌가공산업은 농업인,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농림부장관이 승인한 주류제조면허추천업체, 농림부가 승인한 전통식품명인 또는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업체, 국산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식품가공업법인, 농촌특산단지 육성사업자로 선정된 경영체에 지원

\* 지원제외

- 해당 사업 외에 별도의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직업소유자>

-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 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
- 기타 직업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자영업자>

- 자영업(수산업 및 임업 포함)소득이 3,000만원을 초과하는 자

- 다만, 인삼분야 및 미작분야, 농기계 구입에 소요되는 자금은 직업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지원가능(이 경우에도 농협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는 제외)

- 임대, 위탁 등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
- 운영자금을 신청한 완전계열화 참여 경영체
-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법인

- 유통가공저장업자
- 관광농원사업자
- 금융기관 총부채(금차지원액 포함)가 5억원 이상인 개인

- 종합자금 대출잔액(금차지원액 포함)이 1억원 이상으로 농업경영회계기록(영농일지, 현금출납장,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영체

- 조합원 5인 미만인 영농조합법인
- 배우자 및 법인구성임원이 금융기관 신용관리 대상자등록(제제) 중인 경우

- 농업정책사업(지방자치단체사업포함)의 자부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예시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농기계구입자금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경우 제외)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의 대표자

2) 지원조건

○ 지원자금의 종류

- 시설자금 : 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분야, 농촌가공산업육성, ① 시설농업 기자재생산지원, ④ 농기계보관창고지원사업, 고품질우량종자 개발사업
- 개보수자금 : 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분야, 농촌가공산업육성, 객토자금, 고품질우량종자 개발사업
- 운영자금 : 원예특작, 축산, 농촌관광분야, ②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 ③ 농촌가공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사업

○ 지원조건

- 금리 : 연리 3.0%

- 상환조건

- 시설자금
  - 3년거치 10년균분상환
    - 원예특작, 시설농업기자재생산지원, 농기계보관창고지원, 농촌가공산업육성, 고품질우량종자개발
  - 5년거치 10년균분상환
    - 축산, 유리 혹은 경질의 철골온실, 관광농원, 농촌민박사업
- 개보수자금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운영 자금
  - 2년 이내 상환(다만, 인삼식재자금은 연근별로 3~5년거치 일시상환, 농기계생산원자재구입비축자금은 1년이내 상환)
- 농기계구입자금 : 1년거치 4~7년 균분상환

6. 세부사업내용(축산분야)

가. 지원대상사업

- 한육우·낙농·양돈·양계·기타 축산법 제2조의 가축, 유기축산업 등의 기반조성, 사육시설 및 장비 등. 다만, '개'의 경우는 '진도개'를 말함.
  - 기반시설 : 진입로, 목로, 용수, 전기시설 등
  - 사육시설 : 축사, 창고, 관리사, 자동급이급수, 착유시설, 사일로, 운동장 비가림시설 등
  - 기계장비 : 농기계분야 참조

나.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축산업등록제 대상농가중 미등록 농가는 지원제외. 단, 등록대상이 아닌 농가는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
  - 축산업등록제 대상농가 : 돼지는 가축사육시설 50㎡ 이상 보유농가. 소, 닭, 오리는 가축사육시설 300㎡ 이상 보유농가
- 생산시설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생산시설(기존 시설 포함)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
  - (예)생산시설과 연계되지 않은 집하장, 수송차량 등을 별개사업으로 지원할 수 없음.
- 팔당·대청호 수질보전 특별대책지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환경부고시 제2006-57호)에서 입지를 허용하는 축사 등 사육시설은 신규지원 가능
- 자가배합사료 생산시설(장비)지원은 남은 음식물을 사료화 또는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경우 지

원대상에서 제외

- 낙농분야 후계농업인은 납유처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농가경영안정지원(자율)

① 농·축산경영자금 지원

1. 목적

- 정부가 농업인에게 농업경영비의 일부를 저리로 지원함으로써 농·축산농가의 농업경영을 원활하게 하고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재해 농·축산농가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비 부담을 덜어 주어 신속한 재활기반 구축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 벼 농사 위주의 농가에 대한 일반농업경영자금 지원
- 과수, 채소, 잡업, 원예 등 특작농가에 대한 전문농업경영자금 지원
- 부업규모의 축산농가에 대한 일반축산경영자금 지원
- 재해 농·축산농가에 대한 재해대책자금 지원

3. 근거법령

- 농업농촌기본법 제4조 및 축산법 제3조
- 농업경영자금운용요령(농림부 훈령 제1080호)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P)
총 지원규모	44,700	44,700	38,310	37,600	35,000	34,000	33,000	32,000
재특회계 등	990	1,307	2,133	2,702	2,849	3,187	2,828	2,244

5. 2007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개요>

가. 자금별 사업내용

- ① 일반농업경영자금
- ② 전문농업경영자금

③ 일반축산경영자금

- 지원대상 : 부업규모 축산농가 및 농업종합자금을 지원받지 않은 준·전업 축산농가
- 자금용도 : 사료구입비, 동물약품비 등 축산경영비
- 지원대상 축산규모 : 아래규모의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부업규모의 축산농가
  - 한(육)우·젓소 : 30두 미만, 단, 한우의 번식우 및 말은 20두 미만
  - 돼지 : 500두 미만
  - 닭 : 1만수 미만
- 지원금액 : 축산농가당 사육두수에 따라 10백만원이내(대출잔액 기준)
- 지원조건 : 1년이내(필요한 경우 1년범위내 연장가능), 연리 3.0%
- 우수농가 우선지원 : 융자협의회 심의·결정시 축산시책에 적극 호응한 우수축산농가에게 자금 지원의 우선권 부여
- 가축질병예방 : 구제역 일제소독 등 공동방역 참여, 예방접종실시, 차단방역, 가축수송 차량 소독실시, 방역일지기록, 전염병 발생신고 및 검진협조
- 품질개선 : 규격돈 생산출하, 거세축 생산, 종축등록, 우수축 출하
- 부존자원활용 : 초지조성, 사료작물 재배, 벗짚 이용
- 기타 : 집유일원화참여,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 축산분뇨자원화, 경영장부기록유지, 축사시설현대화 등

④ 재해대책경영자금

〈법령에 의한 재해〉

- 지원대상 :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법령에 의한 재해 농가
- 지원조건
  - 기 대출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피해 규모가 30~50%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50% 이상인 경우에는 2년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 신규 지원자금
    - 지원한도 : 농림부장관이 특별 지원키로 결정한 금액이내
    - 대출조건 : 연리 3.0%, 1년 상환(1년 연장 가능)

〈법령에 의하지 않은 재해〉

- 지원대상 : 시장·군수가 본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법령(농어업재해대책법 및 자연재해대책법)에 해당하지 않는 자연재해 및 기타사고

- 기타사고의 유형 : 화재, 정전, 붕괴, 도난, 폐사 등
- 기타사고의 경우 고의성 유무를 철저히 조사한 후 선의의 피해자에 한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
- 피해율이 30%이상 재해농가 및 법인
- 재해로 인한 농업종합자금을 지원 받은 농가는 지원제외(재해이전에 농업종합자금 또는 농축산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가능)

○ 지원금액 : 호당 100만원~5천만원이내

- 지원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고, 법인의 경우 1억원까지 지원가능
- 호당 지원금액 : 연간 경영비의 50% 범위 내 지원과 1회전 운전자금 중 많은 금액

○ 지원대상자 선정방법

- 피해농가가 시장·군수에게 재해대책자금 지원을 요청
- 시장·군수는 지역농·축협 또는 품목조합(축산계)과 공동으로 피해원인과 피해규모 등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동 자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 농협 지역본부장에게 자금지원을 요청
- 농협 지역본부장은 중앙회장에 자금지원 요청
- 농협중앙회장은 재원의 범위내에서 지원액을 결정, 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하고 농림부에 보고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지원 우선순위는 법령에 의한 재해, 지원금액이 적은 농가부터 하되 피해율이 50% 이상인 농가 우선지원

나. 2007년도 사업비(예산안) 지원계획

자금명	사업비					
	계	국고용자			지방비	자부담
		계	용자	보조		
농축산경영자금	32,000억원	32,000	32,000	-	-	-

\* 예산액은 총지원규모 기준임.

6. 사업신청 안내

- 농림부 협동조합과(농축산경영자금, 02-500-1698)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02-2080-6782)
- 농협지역본부 농업금융팀
- 농협시·군지부, 지역 농·축협 및 품목조합
- 신청방법 : 일반·전문경영자금은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영농회를 통하여 지역농협과 품목조합에 신청하고, 일반축산경영자금은 지역축협과 품목조합(축산계)에 신청